

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두산은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와 2012년 8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애 래 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두산이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두산 :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= 1 : 0.0911668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 :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
 - 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 번지
4. 합병기일 : 2012년 11월 1일
5. 주식회사 두산과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12년 8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나. 기간 : 2012년 8월 24일 ~ 2012년 9월 7일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 : 2012년 9월 7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(02-3398-3292)
 - 2) 실질주주 : 2012년 9월 4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- 마.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두산과 디에프엠에스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2년 월 일

성명 :
주소 :

주민등록번호 :

2012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-12
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

주식회사 두산
대표이사 이재경